

상표의 사용이란 지정상품 또는 그 표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및 상품에 관한 광고, 인쇄서류, 편지지, 간판에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연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 법인 및 자연인도 러시아연방이 가입한 국제조약 또는 상호협약에 따라 러시아 연방의 법인 및 자연인과 동등하게 이 법이 규정하는 권리를 향유하는데 러시아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에 의하여 상표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 상표등록을 밟을 수 없는 상표(부등록 사유)

A.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제6조1항).

1. 식별력이 없는 표지로만 구성된 상표.
2. 러시아연방의 국장, 국기, 기장, 국가명, 국제기관의 기장, 명칭 또는 그 약칭, 감독, 보증, 시험용 공인표장, 인장, 상장 기타 식별력 있는 표장 또는 이들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지만으로 구성된 상표. 다만,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그 소유주의 동의를 얻는다면, 비보호적인 요소로서 상표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다.
3. 특정 상품의 표시로서 통상 사용되는 표지만 구성된 상표.
4. 널리 인정된 용어 또는 기호만으로 된 상표.
5. 상품의 형상, 품질, 수량, 성질, 용도, 가격, 산지, 생산시기, 판매지 또는 판매시기를 표시하는 표지로만 구성된 상표.

다만, 상품의 품질, 성질, 용도, 가격에 대한 표지는 상표의 식별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비보호적인 요소로서 상표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다.

B.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지는 상표 또는 그의 일부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그 지정상품 또는 그 제조자에 관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

2. 공서양속에 반하는 표지.

C. 다음 각 호의 표지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지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제7조 제1항)

1.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타인의 명의로 러시아연방에서 선등록 또는 선출원된 상표.
2. 러시아 연방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의해 상표등록 없이 보호되는 타인의 상표.
3. 러시아 연방에서 보호되는 상품의 원산지 명칭. 다만, 그러한 표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의 명의로 등록된 상표에 비보호적인 요소로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예외로 한다.
4.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증명표장.

D.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모조한 표지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제7조 제2항).

1. 러시아 연방내에 알려져 있는 것으로서 유사한 상품에 관한 상표등록 출원일 전에 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타인이 소유하는 상호(또는 그의 일부).
2. 러시아 연방에서 그에 대한 권리가 타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의장.
3. 저작권자 또는 정당승계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로서 러시아 연방내에 알려져 있는 과학, 문학, 예술에 관한 저작물의 제호, 그러한 저작물의 등장인물의 이름 또는 인용어구, 저작물 또는 그 단편.
4. 유명한 타인의 성명, 별명, 가명 또는 이로부터 유래한 명칭, 초상 또는 서명으로서 그 자, 그 상속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또는 이러한 표지가 러시아 연방의 문화재인 경우 러시아연방 최고 회의의 동의가 없는 경우.

2) 출원원칙 및 요건

가. 일상표 일출원주의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제상품분류

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즉 상표마다 별도로 출원하여야 하나 만일 같은 상표를 여러 상품구분에 해당되는 다수의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출원을 할 수 있다.

나. 선출원주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의 상표에 관해서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상표법 제9조).

다. 출원서류

1개 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서 1통과 상표견본 15매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한다.

한편 단체표장인 경우에는 단체의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외국인 출원

상표등록 출원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에 출원절차를 대리위임하여야 하며 그 대리권은 출원인이 서명한 위임장으로서 증명하여야 한다.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대해서는 러시아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당사국에서 행한 출원에 관한 상표인 경우 최초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특허청에 출원되면 당해 당사국에서의 최초 출원일로부터 우선권이 발생한다.

또한 파리조약 당사국 영역내에서의 그 정부 또는 그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된 국제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의 경우 출품된 상품의 공개적인 전시가 개최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특허청에 출원하면 개시일로부터 우선권이 발생한다.

러시아 연방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국제등록이 된 상표의 경우 그 상표에 대한 우선권은 당해 국제등록일로부터 발생한다.

3) 심사절차

출원의 심사는 특허청이 행하며 예비심사와 실제심사로 구분하여 행한다.

가. 예비심사

출원의 예비심사는 특허청 접수일로부터 1월 내에 행하여 지는데 출원서가 제출되었는지의 여부, 필요사항을 모두 구비하였는지를 심사한 후 당해 출원이 심사될 것인지 거절될 것인지의 여부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나. 실제검사

상표의 실제심사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진 후에 행하여진다.

실제심사에서는 당해상표가 이 법 제1조, 동제6조, 동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였는가의 여부, 예비심사 기간동안 양도되지 않았던 우선권이 양도되었는지의 여부가 심사된다.

출원상표가 상기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등록사정된다.

다. 거절사정 불복제도

예비 심사 또는 실제 심사에 행하여진 거절사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출원인은 당해 거절사정을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특허청 항고심판소(the Chamber of Appeals of the Patent Office, 이하 “항고심판소”라 함)에 항고할 수 있다. 당해 항고는 항고심판소에서 그 접수일로부터 4월동안 심사된다.

항고심판소의 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출원인은 당해 심결이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러시아연방 고등특허심판소(the High Patent Chamber of the Russian Federation, 이하 “고등특허심판소”라 함)에 상고할 수 있다.

고등특허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4) 상표권

가.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상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1년 이내에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으

러시아의 새로운 상표제도



宋 晚 鎬
〈辨理士〉

목 차

1. 근거법규 및 관련기구
2. 상표 및 서비스표
3. 상품의 원산지 명칭과 그에 대한 법적 보호

〈이번호에 전제〉

1. 근거법규 및 관련기구

구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각 공화국(15개)들은 저마다 독립된 산업재산권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먼저 러시아는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명칭에 관한 법률(1992. 10. 17. 시행)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타 다른 공화국들도 자체 입법 시행중이거나 입법 준비중에 있으나 러시아 상표법의 골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러시아의 상기 법률은 상표제도의 근거법규이자 구 소련방 각 공화국 상표제도의 기본구조라 할 수 있다.

상표와 원산지명칭의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러시아연방특허청으로서 러시아 연방특허청은 이 법에 따라 러시아연방내에서의 상표 및 상품의 원산지 명칭의 보호, 상표 등록출원과 상품의 원산지 명칭의 등록 및 그에 대한 사용권 등록출원의 수리, 심사, 등록, 등록증발급, 공식자료집의 발간, 이 법의 운용에 관한 규정 및 해설집의 발간, 기타 러시아연방대통령이 채택한 특허청법에 따른 상표 및 상품의 원산지 명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상표 및 서비스표

1) 상표등록 요건

가. 상표의 정의

상표와 서비스표(이하 “상표”라 함)란 어떤 법인 또는 자연인의 상품 및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함)를 다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표지를 말한다(제1조).

상표는 상표들의 외관상의 관점으로 볼 때 문자표장, 도형표장, 입체적 표장 및 기타 표장으로 분류되는데 언어, 회화, 입체 등에 의한 표지 또는 그들의 결합, 색채 또는 그 결합에 의한 표지도 상표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등록받을 수 있다.

며,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면 존속기간 만료후 6월 이내에도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나. 소멸 사유

A.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면 상표권은 소멸된다.

1.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공통된 품질 또는 특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상품에 단체표장을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당해 단체표장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고등특허심판소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3. 상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당해 상표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고등특허심판소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4. 심판에 의해 상표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5. 상표권자의 사망 또는 소멸.
6. 상표가 특정상품의 표시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지가 된 경우로서 고등특허심판소의 결정이 있는 경우.
7.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

B.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에 의해 등록상표와 단체표장이 취소될 수 있다.

1. 단체표장이 공통된 품질 또는 기타 공통된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2. 상표 등록일로부터 계속하여 5년 또는 심판청구일전 5년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상표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결정하는 경우 상표권자가 당해상표의 불사용이 불가항력적인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제출한 때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

라. 상표권의 이전 및 사용권 허락

상표권자는 계약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상표권을 타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상품 또는 그 제조업에 관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상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표권자(사용권 설정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사용권자)에게 자기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

사용권 계약에서는 사용권자의 상품의 품질이 사용권 설정자의 상품의 품질보다 열악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 및 사용권 설정자는 이를 위한 관리감독권을 가진다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표의 양도 및 사용권 계약은 특허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이 없으면 이들 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5) 상표권자의 보호

가.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상표의 사용에 관한 전용적 권리, 상표의 처분 및 그 상표에 대한 타인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상표권자의 허락이 없는 한 어떠한 자라도 러시아 연방에서 보호되는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상표권자는 상표의 측면에 당해 상표는 러시아연방에 등록된 상표라는 취지의 경고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상표권자가 직접 또는 그의 동의를 얻어 거래과정에 놓여진 상품에 관하여 상표권자는 당해 상표에 대한 타인의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

나. 상표권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 또는 그 상표의 자정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목적으로 권원없이 제조, 수입, 판매를 위한 주문, 판매, 기타 영업적인 사용 또는 소지를 하는 행위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다. 상표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및 수단

A. 구제절차 기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이 법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러시아연방의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 중재법원 또는 화해법원이 심사한다.

1. 상표전용권의 침해
2. 상표 이용권 계약 및 양도 계약의 체결 및 이행

B. 구제수단

상표권 침해 행위는 러시아연방의 법에 따라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수반한다.

상표의 불법사용에 대한 민사적 권리의 보호수단으로서 침해금지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수단이 주어진다.

1. 손해를 받은 자의 영업적 신용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공고의 청구.
2. 상표 또는 이미 구축된 이미지와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거나, 이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표시를 불법으로 사용한 상품 또는 그 포장으로부터 상표 또는 이와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한 표시의 제거에 관한 청구.

3. 상품의 원산지명칭과 그에 대한 법적 보호

1) 등록 요건

가. 상품의 원산지 명칭의 정의

상품의 원산지 명칭이란 국가, 거주지, 지명 기타 지리학적 장소(이하 “지리학적 장소”)의 명칭으로서, 전적으로 또는 주로 당해 지리학적 장소의 특징적인 자연조건 또는 인간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거나, 자연조건과 인간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결정되는 특수한 성질을 가진 상품을 표시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상표법 제30조).

상품의 원산지 명칭에는 지리학적 장소의 역사적 명칭이 포함되지만 지리학적 장소의 명칭이나 이를 포함하는 것일지라도 러시아연방내에서 그 생산지와 관련되지 않은 특정 상품의 표시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시는 원산지 명칭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품의 원산지 명칭이 상품, 포장, 광고, 상품설명서, 송장, 편지지, 기타 시장에서의 상

품의 소개에 관한 서류에 사용된 경우, 이는 상품의 원산지 명칭의 사용으로 간주한다.

나. 원산지 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1인 또는 2 이상의 법인 또는 자연인은 상품의 원산지 명칭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동일한 지리학적 장소에 위치한 법인 또는 자연인이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그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상품의 원산지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출하원칙 및 요건

가. 출하원칙

원산지 명칭의 등록 및 그에 대한 사용권등록출원 또는 이미 등록된 원산지 명칭에 대한 사용권 등록출원(이하 “출원”이라 함)은 출원인이 독립하여 또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특허청에 대하여 행하여야 하며 상품의 원산지 명칭마다 행하여야 한다.

나. 출원 요건

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A. 원산지 명칭의 등록 및 그에 대한 사용권등록출원인지 또는 이미 등록된 원산지 명칭에 대한 사용권등록출원인지의 표시
- B. 출원인 및 그의 거주지에 관한 표시
- C. 원산지 명칭의 표시
- D. 원산지 명칭 및 이미 등록된 원산지명칭이 사용되는 상품의 종류
- E. 생산지(지리학적 장소의 범위)의 표시
- F. 상품의 특수한 성질에 대한 설명

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A. 출원인이 당해 지리학적 장소에 거주하며 당해 지리학적 장소의 특징적인 자연조건 또는 인간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거나, 자연조건과 인간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결정되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는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로서, 권한있는 자

에 의하여 작성된 것.

B. 외국출원인의 경우, 원산지의 국가에서 당해 원산지 명칭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C. 필요한 수수료의 납부 영수증

3) 심사절차

출원심사는 특허청에서 행하며 상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비심사와 실체심사로 구분하여 행한다.

가. 예비심사

출원에 대한 예비심사는 출원일로부터 2월 이내에 행하여 지는데 예비심사에서는 출원의 내용,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었는지의 여부와 이들 당해출원이 심사에 계속될 것인지 또는 거절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나. 실체검사

예비심사를 통과한 출원에 대해서는 제30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특허청은 상품의 원산지 명칭에 대한 등록사정, 또는 원산지 명칭 및 그 사용권에 대한 거절사정, 또는 이미 등록된 원산지 명칭의 사용에 대한 허락 또는 거절에 관한 사정을 내린다.

다. 거절사정 불복제도

예비심사 또는 실체심사 결과 행하여진 거절사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출원인은 사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항고심판소에 항고를 할 수 있다. 당해 항고는 항고심판소에서 그 접수일로부터 4월간 심사된다.

항고심판소의 심결에 불복이 있는 출원인은 심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내에 고등특허심판소에 상고를 할 수 있다. 고등특허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4) 상품의 원산지 명칭의 등록

가. 존속기간

원산지 명칭의 등록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나 원산지 명칭에 대한 사용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청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사용권의 존속기간은 10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며 존속기간 갱신출원기간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내이지만 비록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만료일 후 6개월 내에는 추가수수료를 납부하면 존속기간 갱신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나. 원산지 명칭의 등록의 소멸사유

당해 지리적 장소의 특징적인 조건이 소멸하거나, 등록원부에 기재된 특성을 가진 상품의 제조가 불가능해지면 상품의 원산지 명칭의 등록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

외국법인 또는 자연인의 명의로 등록된 상품의 원산지 명칭의 경우, 상기 규정 이외에도, 각각의 상품에 관한 원산지 국가에서 상품의 원산지 명칭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 원산지 명칭에 대한 사용권의 소멸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 상품의 원산지 명칭에 대한 사용권은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1. 당해 상품의 원산지 명칭에 관하여 등록원부에 명시된 상품의 특성이 상실된 경우
2. 상품의 원산지 명칭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3. 등록권자인 법인의 해산
4. 등록권자가 특허청에 청구한 경우

5) 상품의 원산지 명칭의 등록권자 및 사용권자의 보호

가. 등록 및 사용권의 효력

원산지 명칭을 등록받은 자는 그 자가 생산하는 상품이 이 법 제30조 규정된 요건을 구비한 경우 그 명칭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사용권자는 상품의 원산지 명칭 측면에 당해 표시는 러시아연방에서 등록된 상품의 원산지 명칭이라는 취지의 경고표시를 할 수 있으나 타인에게 상품의 원산지 명칭의 사용권을 허여해 줄 수 없다.

나. 침해로 보는 행위

사용권자가 아닌 자는 정당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라도 등록된 원산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번역어이거나 또는 “a kind of”, “type”, “imitation” 등과 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원산지 및 상품의 특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할 수 있는 유사한 상품에 관한 유사한 표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제40조 제2항).

다.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및 수단

A. 구제절차기관

상품의 원산지 명칭의 불법사용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이 법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러시아연방의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 중재법원 또는 화해법원이 심사한다.

B. 구제수단

제40조 제2항에서 정한 규정에 반한 상품의 원산지 명칭 또는 상품의 원산지 명칭에 유사한 표시의 사용에는 러시아연방이 법에

따라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수반한다.

등록된 상품의 원산지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자는 상품의 원산지 명칭에 대한 사용권자, 공공기관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그 사용의 중지, 모든 관련된 자들에 대한 손해의 배상 및 상품의 원산지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이익액의 지방예산으로의 지급.

2. 손해를 받은 자의 영업적 신용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공고.

3. 상품의 원산지 명칭 또는 이미 구축된 이미지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이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표시를 불법으로 사용한 상품 또는 그 포장으로부터 상품의 원산지 명칭 또는 그와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한 표시의 제거. (♣)

신간안내

特許法の諸問題(上)(下)

(주)한빛지적소유권센터 발간

4×6배판, 양장본, 각 권 15,000원

자세한 안내 및 구입문의: 567-1657/8